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042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재판경과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0426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4가합59220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4가합59220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27.

판 결 선 고 2018. 5.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4,14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 14, 15, 16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와 피고가 2004. 8. 24. 혼인신고를 마치고, 원고는 치과의원을, 피고는 피부과의원을
운영하였다.

○ 원고의 어머니 C이 2007. 8. 9. 서울 서초구 D, E, F, G 토지에 관한 자신의 61.72/75712.7 지분
중 41.146/75712.7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20.574/75712.7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 위 토지들에 건축되어 있던 상가건물이 재건축되면서 원고와 피고가 그 재건축 건물 중 [별지]

제1항 기재 H호와 제2항 기재 I호를 분양받고, 2009. 12. 23. 위 H호와 I호에 관하여 각 원고 2/3

지분, 피고 1/3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9. 3.경 위 H호와 I호에 인접한 J호와 K호를 매수하였다.

[2]

○ 원고와 피고는 위 H호, I호, J호, K호를 통합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과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과의원이 진료공간을 구분하면서 출입구, 환자대기실, 상담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곳에서 원고는 2009. 12.경부터 치과의원을 운영하였고, 피고도 2010. 3.경부터 피부과의원을 운영하였다.

○ 원고가 운영한 치과의원은 주로 J호와 K호 부분에 위치하고, 피고가 운영한 피부과의원은 주로 위 H호와 I호 부분에 위치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10. 3.경부터 위 피부과의원(이하 '이 사건 피부과의원'이라 한다)을 다른 의사에게 임대하면서, 원고와 피고를 공동임대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피고는 2010. 3.경부터 2013년 말까지 이 사건 피부과의원의 임대수익을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L 계좌로 수령하면서, 그 일부를 원고에게 분배하였다.

○ 한편으로 원고가 2013. 12.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2014. 5.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1690, 2014드합3276).

○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피부과의원의 임대수익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 M으로부터 원고와 피고가 8 : 2의 비율로 각자 수령하였다.

○ 2010. 3.경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피부과의원의 임대수익 수령 및 분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가 수령한 임대수익		원고에게 분배한 임대수익
기간	임대수익	
2010. 3.~	6,500만 원	0
2011년	7,800만 원	0
2012년	7,800만 원	0
2013년	5,800만 원	1,600만 원
<2013. 4.까지의 월차임은 650만 원, 2013. 5.부터의 월차임은 400만 원 임>		
2014년	4,800만 원	3,840만 원
2015년	4,800만 원	3,840만 원
~2016. 6.	2,400만 원	1,920만 원
합계	3억 9,900만 원	1억 1,200만 원

○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피부과의원의 임대수익을 8:2의 비율로 분배하였다고 세무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위와 같이 분배한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2013년에 10,443,121원, 2014년에 8,748,336원, 2015년에 8,534,326원, 합계 27,725,783원을 납부하였다.

[3]

○ 원고와 피고의 위 이혼 등 소송에서 2015. 9. 23.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H호와 I호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르2027, 2015르2034).

○ 위 항소심에서 2016. 5. 31. 위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H호와 I호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8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피부과의원의 임대수익을 8:2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위 임대수익 311,000,000원 중 원고 몫인 8/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20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와 피고가 위 임대수익을 8:2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2009. 12. 7. 위 임대수익을 2:1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갑 제17호증), 피고는 2010. 3.부터 2016. 6.까지의 위 임대수익 399,000,000원 중 원고 몫인 2/3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54,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으로 원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중 8/10에 해당하는 27,725,783원을 납부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위 임대소득을 2:1 비율로 분배해야 한다면 원고는 위 세금 중 2/3에 해당하는 22,981,636원을 납부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4,744,1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등 소송에서 이 사건 피부과의원의 임대수익에 대해 상당 부분 판단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임대수익의 분배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피부과의원에 관하여 2013. 5.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로는 피고가 고용원장을 두고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임대수익을 고용원장의 급여 또는 세금으로 비용처리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2013. 5.부터는 실질 임차인이 이 사건 피부과의원을 운영하였고,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가 1:1 비율로 임대수익을 나누기로 하여 8개월간 원고에게 월 임대료 4,000,000원 중 2,000,000원이 지급되었다. 그 후 원고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인을 겁박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대료의 8/10에 해당하는 3,200,000원을 직접 받아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제출한

동업계약서(갑 제17호증)는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훔쳐 위조한 문서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동임대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작성된 것이며, 원고와 피고 모두 위 동업계약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는 통정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이혼 등 소송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5 내지 37호증, 을 제37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 원고가 2013. 12.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피고도 2014. 5.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1690, 2014드합3276).

○ 원고는 위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H호와 I호에 관한 피고의 1/3 지분 이전과 660,066,667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 원고는 위 660,066,667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피부과의원의 임대수익을 8:2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0. 3.부터 2013. 11.까지 수령한 임대수익 중 224,000,000원을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224,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위 소송에서 2015. 9. 23.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H호와 I호의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 위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피부과의원의 임대수익을 8:2 비율로 분배하였다고 세무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임대수익을 8:2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임대소득 중 원고에게 분배해야 함에도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224,000,000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르2027, 2015르2034).

○ 원고가 위 항소심에서 제출한 2016. 2. 19.자 부대항소장과 2016. 3. 21.자 준비서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6. 2. 19.자 부대항소장 제16~17면 중 ~ (중략) 이 사건 원심 판결은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분배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증거력과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해 위 약정의 준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며,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수익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원심 중 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동안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은 피부와 임대수익 중 80%에 해당하는 2억 2,400만 원의 임대수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금액은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전액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이하 강조 표시는 이 사건 재판부에서 한 것임).

2016. 3. 21.자 준비서면 제8~9면 중 ~ (중략) 피고는, 위 각 상가 중 일부 면적에서 N 피부과를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무려 3억 1,100만 원이나 되는 임대소득을 취득하였고, 최초 개원 당시 원고와 사이에 위 N 피부과의 임대수익 중 80%를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수익 분배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약정에 위반하여 2013까지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수익 총 2억 2,400만 원을 전혀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 (중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까지 미지급한 원고의 지분비율(80%)에 상당하는 2억 2,4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이 사건 재산분할과 별도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위 항소심에서 2016. 5. 31. 앞서 본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H호와 I호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8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 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르2027, 2015르2034 사건 판결문 제19~20면 중 ~ (중략)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상가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의 80%를 원고에게, 20%를 피고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 (중략) 위 2억 2,400만 원은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2억 2,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 (중략) 원고와 피고의 분배내용을 8:2의 비율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 수입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중략) 다만, 2010. 3.부터 2013. 11.까지 임대수익을 8:2의 비율로 세무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임대소득을 단독으로 취득하거나 2013. 5.부터 2013. 11.까지 반씩 지급받은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하기로 한다.

○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그 판결이 2016. 6.경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이혼 등 소송을 '이전 소송'이라 한다).

나. 임대수익 관련 청구

(1)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이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60,066,667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피부과의원의 임대수익을 8:2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0. 3.부터 2013.

11.까지 수령한 위 임대수익 중 224,000,000원을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224,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을 이유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을 재산분할 청구취지에 포함시켰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약정에 기한 일반적인 민사청구와 차이를 두기 어렵다.

■ 한편으로 원고는 이전 소송이 제1심 계속중이던 2014.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피부과의원의 임대수익을 8:2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0. 3. 이후 피고가 분배하지 않은 임대수익이 224,000,000원이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224,000,000원에 관해 주장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 2015. 9. 23. 선고된 이전 소송의 제1심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8:2 비율로 임대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224,000,000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판결이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약정에 기한 일반적인 민사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차이를 두기 어렵다.

■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부대항소를 하면서 위 판결이 원고와 피고의 분배약정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면서, 위 224,000,000원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부당이득으로' 전액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 224,000,000원에 관하여 일반적인 민사청구인 부당이득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다고 할 것이다.

■ 이전 소송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가사사건인데,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가사사건 중에는 다류 가사소송과 같이 성질이나 절차상 순수한 민사사건인 경우도 있다. 임의관할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30조, 제411조에 의하여 가정법원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고, 그 항소심에서는 관할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일반적인 민사청구인 부당이득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경우, 그 항소심에서 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해 판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위 항소심 판결이 2016. 5. 31.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피부과의원의 임대수익을 8:2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피고가 재산분할과 별도로 원고에게 224,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해 판단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2010. 3.부터 2013. 11.까지 피고가 위 임대수익을 단독으로 취득하거나 2013. 5.부터 2013. 11.까지 반씩 지급받은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이전 소송의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6,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 내용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가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반적인 민사청구인 부당이득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것이고, 이러한 판결이 전속관할 위반 등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2016. 6.경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가 2016. 10. 20.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앞서 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피부과의원의 임대수익을 8:2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위 임대수익 311,000,000원 중 원고 몫인 8/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20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위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 임대수익을 2:1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2010. 3.부터 2016. 6.까지의 위 임대수익 399,000,000원 중 원고 몫인 2/3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54,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2014. 12. 15. 제출한 이 사건 소송의 소장에서, 자신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직접

피부와 원정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비율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요청하여 현재는 원고가 임대료 중 80%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전 소송을 제기한 2013. 12. 경 이후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8:2 비율에 의하여 임대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분배를 주장하는 임대수익은 2013년까지의 임대수익이 된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피부과의원의 임대수익 중 피고가 원고에게 분배하지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2013년까지의 임대수익을 넘어서 2014년 이후의 임대수익에 관해서도 분배를 구한다면, 이는 원고 자신의 주장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청구 역시 기각되어야 한다.

다. 세금 관련 청구

이 사건 피부과의원은 원고가 2/3 지분, 피고가 1/3 지분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H호와 I호에 주로 위치해 있으므로, 이 사건 피부과의원의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지분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2:1 비율로 부담할 것이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부과의원의 임대수익을 원고와 피고가 8:2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으로 원고는 2009. 12. 7. 위 임대수익을 원고와 피고가 2:1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위에서 본 원고 2/3 지분, 피고 1/3 지분에 따른 2:1 비율과 동일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피부과의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중 원고가 8:2 비율에 따라 납부한 27,725,783원과, 원고가 2:1 비율에 따라 납부할 22,981,636원(갑 제19호증)의 차액인 4,744,147원(= 27,725,783원 - 22,981,6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7. 14.까지는「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안동철 판사 김수정

[별지]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F에 있는 O상가P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Q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5층

판매시설, 업무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R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51.72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서초구 F 대 4799.5㎡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표시 : 4799.5분의 23.9951

2.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F에 있는 O상가P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Q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5층

판매시설, 업무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S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68.90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서초구 F 대 4799.5㎡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표시 : 4799.5분의 31.9592 <끝>